

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“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”를 “구미오성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”을 “구미오성문화재단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”을 “구미오성문화재단”으로 하고 “진흥재단”을 “문화재단”으로 한다.

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 내지 제11조중 “진흥재단”을 “문화재단”으로 한다.

부칙 제2항 중 “진흥재단”을 “문화재단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조례) 이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출연대상재산이 문화재단으로 등기 이전이 완료됨과 동시에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는 폐지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
제명 <u>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</u>	제명 <u>구미오성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미시의 문화예술체육진흥을 위한 <u>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</u> 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<u>구미오성문화재단</u>
제2조(법인격 및 명칭) <u>진흥재단</u> 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<u>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</u> (이하 “ <u>진흥재단</u> 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	제2조(법인격 및 명칭) <u>문화재단</u> · <u>구미오성문화재단</u>(· · <u>문화재단</u>):
제3조(사무소) <u>진흥재단</u> 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구미시내에 둔다.	제3조(사무소) <u>문화재단</u> · ·:
제4조(정관) ① <u>진흥재단</u> 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 ~ 11. (생략) 12. 기타 <u>진흥재단</u>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<u>진흥재단</u> 이 정관작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허가신청하기 전에 미리 구미시장(이하 “ <u>시장</u> 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제4조(정관) ① <u>문화재단</u> 1. ~ 11.(현행과 같음) 12. · <u>문화재단</u> ② <u>문화재단</u>

현행	개정안
제5조(임원 등) ① <u>진흥재단</u> 에는 이사를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. ② ~ ③ (생략)	제5조(임원 등) ① <u>문화재단</u>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사업) ① <u>진흥재단</u>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~ 2. (생략) ② <u>진흥재단</u> 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.	제6조(사업) ① <u>문화재단</u>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② <u>문화재단</u>
제8조(공무원의 겸임)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 3의 규정에 의하여 <u>진흥재단</u> 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<u>진흥재단</u> 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<u>진흥재단</u> 의 사무국장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.	제8조(공무원의 겸임) · <u>문화재단</u> · <u>문화재단</u> · <u>문화재단</u> · ..
제9조(회계연도) <u>진흥재단</u> 의 회계연도는 구미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	제9조(회계연도) <u>문화재단</u>

[illegible]